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RGIA)를 중심으로

방 일 권*

1. 들어가는 말
2. 러시아 역사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 1)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
 - 2) 제정러시아기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 3) 소비에트 시대의 기록분류와 '르기아'의 기록물
- 3.러시아 역사기록보존소와 역사학

1. 들어가는 말

우리에게 있어 러시아의 역사기록보존소와 그 소장 기록물들은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특별히 러시아가 가진 기록들은 주로 조선 이후 시기 양국의 공통적인 역사적 기억, 또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잃어버린 기억의 고리를 다시 이을 수 있게 해

*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상임 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생

주요논저 :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상과 기록문헌보관소 자료조사 : RGIA와 TsGAKFFD SPb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1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2.

주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기록보존소들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비단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타 학문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옛 기록의 폭넓은 활용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잠재적 이용도와 가치에 비해 러시아 기록보존소는 아직 한국의 기록보존 관계자들에게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일차적으로 언어적 장벽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낯설음의 밑바탕에는 러시아 기록보존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정보의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까지 국내 학계에 러시아 기록보존소에 관한 본격적인 소개를 한 연구자로 조호연이 유일하다. 1990년대 러시아가 맞은 전환기의 기록보존소 현황에 관한 연구와 기록보존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글¹⁾은 한국의 기록관리학계에 러시아 기록보존소를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독자가 기록물 운영의 구체적 모습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우리가 가진 정보의 부족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러시아 기록보존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적지 않은 오해들이 상호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하나로 기록보존업무의 무질서와 통제 중심의 기록보존소 운영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 전반의 무질서 및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등 오늘날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서유럽과 달리 외국인 연구자라는 이유를 들어 내국인과 차별되는 자료이용비를 요구받았다든지, 자료 이용에 대해 의심스런 눈초리를 받았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경험

1) 조호연(1996) 및 조호연(1997)을 참조하라.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만들어진 잘못된 이해가 연구자로서 정작 보아야 할 보다 중요한 내용들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 역시 막 시작된 러시아 기록보존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또 다른 하나에 불과하다. 기록보존학에 관한 일천한 이해를 갖고 있는 필자가 기록문화 선진국인 러시아의 기록보존업무에 관해 언급한다면 그것은 곧 ‘수박 겉핥기’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에 얼마간이나마 부응할 수 있다는 주변의 격려를 힘입어서, 또한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앞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기록보존소를 예로 들어 역사기록물의 분류 방식을 소개하기로 용기를 내었다. 본문에서 필자는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의 간략한 역사와 소장 기록물의 현황 및 분류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서 러시아에서 기록물에 관한 실무적인 분류의 원칙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기록물 분류체계의 러시아적 원형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로부터 러시아 기록보존소의 어떠한 특성들이 파생되었는가?’ ‘러시아 역사기록보존소가 가진 특성은 그 나라 역사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의문들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 러시아 역사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1)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르기아)

(1) 르기아의 간략한 역사와 소장기록물의 현황

1993년 7월에 정부는 '러시아 연방 기록фон드와 아카이브들에 관한

러시아 연방 입법의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모두 7장 25개조로 구성된 동 법안은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모든 기록보존소 및 유관자들의 역할에 관한 가장 최근의 규정이자 최고의 지침으로 여겨진다.²⁾ 이 기본법의 제 1조는 기록보존소와 그에 보존되는 기록폰드에 대한 러시아 측의 정의가 잘 드러나 있다. 즉 동 조문은 '러시아 연방 제 민족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반영하고, 역사적,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의의를 가지며, 제 민족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고유한 부분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총체를 기록폰드로, 또한 기록폰드의 이용과 보존을 주관하는 기관을 기록보존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어 '아르히브(архив = archive)'는 '이전과 동시대인들의 정신적 노동의 결과들에 대한 기록'으로서 정치조직, 사회단체나 개인 및 민족 등에 의해 생산되는 문화적 자원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된 이들 기록물을 정리, 보존하고 또한 열람하는 문화기구라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³⁾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러시아어 용례를 통해 볼 때 통상

2) 소비에트 시절에 나온 이전 법안과 비교할 때 1993년 법안은 업무자료의 이용과 보존에 있어서의 평등성과 탈정치성, 그리고 국가부문 기록폰드의 축소라는 세 측면에서 새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방일권(2002), 118-119.] 평등성을 대표하는 조항으로 20조를 들 수 있다. 이 조문에서는 기록물의 이용과 보존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조직, 사회운동 단체나 부서를 막론하고 어떠한 특권도 부정되고 있다. 법안의 탈정치성은 제 1조에서 드러나며, 국가부문 기록폰드의 축소는 10조에서 규정된바, '연방공화국, 크라이, 주, 자치구,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의 국가소유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기록물만을' 국가부문 기록폰드로 제한한 것의 의미이다. 이에 덧붙여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및 개인 역시 자신의 기록보존소를 가질 수 있고'(7조), 그것들은 '비국가적 부문'으로 규정되었음(6조)도 주목할 만하다. '기본법'의 전문은 <http://www.rusarchives.ru/lows/zakon.shtml>를 참조하라. 1990년대 러시아 기록보존소의 변화와 현재의 과도기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호연(1996)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나 Grimsted(1993), pp. 614-662; Karasik T.(1993)도 함께 참조할 가치가 있다.

‘아르히브’라고 하면 장소적 의미가 강하여 우리말로 ‘기록보존소’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보존된 기록물을 지칭할 때는 ‘기록보존소 자료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러시아어 머릿글자를 따라 ‘르기아(РГИА : RGIA)’로 불리는 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는 현재 러시아 제 2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네바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가장 큰 역사기록보존소의 하나로 꼽힌다. 1367개로 분류된 르기아의 기록고(фонд)들은 18-20세기 초까지 주로 제정러시아의 최고 통치기관들과 전 러시아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 및 사적인 주요조직들의 자료와 개인들의 기록물이 망라되어 있다. 2000년 현재 ‘르기아’의 소장 문서철은 657만 2364 문건이나 되며, 그 중요성이나 소장기록물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제정사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들러야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기관의 공식 명칭에서 우리는 소장 기록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역사기록보존소(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를 ‘러시아’와 ‘국립’이라는 두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먼저 ‘국립의’라는 형용사는 러시아에서 설립의 주체가 국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 중요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사설기관과 차별성을 갖는다. ‘러시아의’는 기록보존소의 지리적 위치를 표기하는 용어가 아니라 기록물의 중요성 및 기록보존소의 권한과 관련된 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의미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간략하나마 ‘르기아’의 역사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르기아’의 출발은 10월 혁명 다음해인 1918년 6월에 볼셰비키 정권에 의해 발표된 “기록보존소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화에 관하여”(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라는 법령으로부터 이야

3) 방일권(2002), 116.

기되어야 할 것이다. 동 법안을 근거로 당이 주관하는 ‘중앙기록물관리부’는 기록보존업무를 통괄하고 전연방적 의미를 지닌 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직속 기록문서보관 센터들을 설립하였다⁴⁾. 이 과정에서 최초의 러시아국립중앙역사기록보존소가 1925년 4월 22일자 중앙기록물관리부의 회람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⁵⁾. 이 최초의 명칭에서 ‘러시아’는 지역적 의미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2월 28일자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중앙기록보존업무가 통합되면서 동 기관은 중앙역사기록보존소 레닌그라드 지부(Ленинградский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ль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머리글자를 따라 ‘로찌아’)로 불리게 되었다. 이 기구는 약 3년간 여러 건물들에 산재해 있는 역사기록물들을 관리하다가 자료들의 성격과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1932년 10월부터 산하에 4개의 지국을 갖는 모양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각 지국은 경제, 정치 및 법, 문화와 일상생활, 육·해군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이들 지국은 4개의 독립된 기록보존소(архив)들로 승격되었으며, 그 중에 국민경제 기록보존소, 국내정치 및 문화와 일상생활 기록보존소, 그리고 군역사기록보존소 등 세 기관이 1936년부터 독자적인 중앙기록보존소(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로 독립되었다.

‘르기아’의 두 번째 명칭인 ‘로치아’와 그 관리를 받던 기록보존소 지국들의 독립 이후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 ‘중앙’(центральный)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의미는 1941년 5월 14일에 나온 “소련 국립기록보존소 기록고(фонд : collection) 및 소련 국립 기록보존소 구성망에 관하여(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ном фонде СССР

4) 조호연(1997), 118-119.

5) 엄밀히 말해 동 기관은 1922년에 레닌그라드 지역에 설립된 몇 개의 기록물 보관센터들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겨났다.

и се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хивов СССР)”라는 법안에서 보다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중앙’ 기록보존소는 전국적인 차원의 중요도를 갖는 기록물이 보존되는 최고 등급의 기록보존소를 뜻했다. 중앙 기록보존소는 국가 최고기관의 통제 아래, 기록보존업무에 관한 개별적인 발의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새 업무체계를 제안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된 기록물 관리 영역에서 하급 기록보존소 - 주립, 시립, 사설 및 개인 기록보존소 등 - 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1941년 법안은 기록자료의 분류와 기록보존소 체계의 구성 문제가 이전의 실험 단계를 벗어나 소위 소비에트적인 원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법안에 의거하여 중앙역사기록보존소 레닌그라드 지부는 군사역사기록보존소를 제외한 옛 부속 지국들을 다시 통합함과 동시에 명칭 또한 ‘레닌그라드 국립중앙역사기록보존소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в Ленинграде : ЦГИАЛ’(TsGIAl)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사실 ‘츠키알’ 시대부터 오늘날의 르기아가 자신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확대·개편된 역사기록보존소에는 군사 분야를 제외한 제정러시아 시기의 중앙행정, 사법, 재무, 경찰업무 등 거의 모든 관련 기록물들이 집중되게 되었으며, 혁명 이전까지의 주요 정치, 문화, 학계 인사들의 개인 자료들도 모여들게 되었다. 반면 1941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역사기록물들-주로 도시행정 및 문화 관련 기록물-은 레닌그라드 지역 국립역사기록보존소로 이전되었다.

1941년 독일과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레닌그라드는 총 84개에 달하는 역사기록보존소 기록고 자료들-약 2만9천 문서철-이 화재로 소실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하였으나 ‘츠키알’의 주요 자료를 오렌부르크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대부분의 귀중한 기록들을 보존하는데 성공

하였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보존처리 등 기록보존소로서의 기본 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고, 연구자들이 또한 열람실에서 작업을 계속 진행했던 점은 역시 ‘르기아’ 역사의 ‘영웅적인’ 한 페이지로 기억되고 있다. 종전 후 1950년대에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본격적인 재 파악 작업이 진행되어 1956년경에 1074개 기록고에 대한 기술(記述)작업이 완료되었다.

1961년에는 모스크바 국립중앙역사기록보존소(ШГИАМ)이 폐쇄되면서 레닌그라드 국립중앙역사기록보존소로 다수의 역사기록물들이 이관된 이후 기관명이 소련 국립중앙역사기록보존소(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ССР : ШГИА TsGIA)로 재개칭되었다. 사실상 이 무렵에 현재 ‘르기아’의 형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무렵 기록고의 정리목록 작업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그후의 작업은 추가적인 기록물의 재분류 및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분류체제의 변화에 따른 재정리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소련 국립중앙역사기록보존소의 활동이 정지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르기아’의 일군들은 약 230만장에 육박하는 소장기록물의 카드 작업을 수행했고, 1970년대는 효과적인 자료찾기를 위한 주제별 분류 및 정리작업, 주석 목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 도서의 출간과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소장기록물의 현황

‘르기아’에 소장된 기록물의 대다수는 제정러시아 중앙행정부서를 비롯한 중앙통치기구들과 연관된 것들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혁명 전까지 제정러시아의 수도였던 관계로 당시의 주요 자료들의 수집과 소장의 중심지였다. 제정러시아는 역사기록을 남기는 일에 최선의 기술들을 이용해 온 유럽 국가의 하나였다. В. К. Булла(Булла)와 П. С.

쥬코프(Жуков), Я. В. 슈테인베르그(Штейнберг) 등으로 대변되는 유명한 사진사들을 고용하여 황실과 황도의 기록자로 삼은 일이라든지, 영화 기술의 선구자였던 루비에르 형제들을 초청하여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비롯한 황실의 주요 행사들을 기록하도록 한 사실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초기에 ‘역사기록적인 성격이 강했던’ 영화들⁶⁾을 대거 제작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권력의 선전과 유지에 적극 이용했던 소비에트 정권의 정책 역시, 시대의 최신 기록 매체들을 역사납기기로 끌어들이었던 제정러시아적 전통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르기아’가 제정러시아 시대의 원로원(Сенат) 및 신성종무원(Св. Синод)⁷⁾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비단 이곳이 제정러시아 관련사료들의 최고 소장처라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 측면에서도 원로원이 오늘날 ‘르기아’의 모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미 고대 루시 시절부터 공후의 궁정이나 교회가 주축이 되어 주요 기록들을 보존하여 왔으나 역사기록보존소 설립시 모태가 되는 자료는 1711년 설립 이후부터 1802년에 걸친 원로원 소속의 기록물보존고에 보관되어 왔던 기록물들이었다⁸⁾.

- 6) 이는 소비에트 영화를 사료로 분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프랑스의 역사가 마르크 페로의 주장이다. 페로 M.(1999), 17-18을 참조.
- 7) 원로원과 신성종무원은 뽀뜨르 1세에 의해 각각 1711년과 172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역사가들은 이들을 모스크바 러시아와 제정러시아의 국가적 성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원로원이 법률과 사법활동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 법에 의한 통치를 상징한다면, 신성종무원은 이전까지 러시아정교회를 관할하던 총대주교제가 폐지(1700년)된 뒤에 이를 대신하여 종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세속기관이다. 황제는 세속적인 질서를 대표하는 원로원과 정신적인 질서를 관장하는 신성종무원을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어 양 영역을 통괄하는 통치체제의 정점에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 ‘르기아’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은 19세기 전반에 건설되었다.
- 8) 현재 이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고문서기록보존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Древних Актов : РГАДА)와 러시아연방 국립기록보존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ГАРФ)로

두터운 관료층이 사회를 지배하던 제정러시아기에 생산된 기록물의 양은 그야말로 상상을 넘어선다. 현재 ‘르기아’에 남아있는 기록물만 해도 총 1367개의 기록고(記錄庫 : фонд 폰드, collection)에 657만 2000여 문서철(文書綴 дело 젤로, file)에 이르는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은 제정러시아 중앙통치기관들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966개의 기록고에 627만 문서철이 넘는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다음을 차지하는 역사기록물은 사실 기관들과 사회조직 및 기구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336개 기록고에 모두 27만 5천 문서철 이상이 되며, 마지막으로 순수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자료들이 약 11만 문서철을 넘어선다⁹⁾.

이처럼 기록보존소 전체 소장자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적 의미의 역사기록물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총괄법규관련 기록물 - 약 11만 문서철
- ② 중앙 기관 총괄 행정관련 기록물 - 약 44만 문서철
- ③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 약 75만 문서철
- ④ 법전편찬 기관 관련 기록물 - 약 11만 문서철
- ⑤ 내무부 관련 기록물 - 약 87만 문서철¹⁰⁾
- ⑥ 경제관계기관 기록물 - 약 140만 문서철¹¹⁾

이관되어 보존되고 있다.

- 9) 그 이외에도 수기(手記) 및 필사본서적이 5천권 이상, 학문·기술 자료가 14만여 문서철에 육박한다.
- 10) 내무부 기록물들에는 약 30만건에 달하는 국내정치문제 관련 기록물을 비롯하여 약 9만 문서철의 경찰조직관련 기록물, 약 5만 5천여 문서철을 넘어서는 검열기관 관계 기록물, 지방행정 및 자치기관 관계 기록물(22만여 문서철), 도시건설 및 건축관계 기록물(4만 6천여 문서철), 보건 및 위생, 그리고 우편과 통신 관계 기록물(약 13만 문서철) 등 다양한 역사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정러시아기 내무부의 소관업무가 광범위했던 것에 기인한다.
- 11) 재무행정 및 신용제도(약 50만 문서철), 외국과의 거래 관련 기록물(약 3만 문서철), 국내 시장 및 공업 관련 기록물(24만여 문서철), 농업관련 기록물(26만여 문서철), 기타 기록물(36만여 문서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⑦ 교육부 관련 기록물 - 약 15만 문서철
- ⑧ 종교 관련 부서 관계 기록물 - 약 74만 문서철
- ⑨ 법무부 관련 기록물 - 약 62만 문서철
- ⑩ 러시아 황가와 그 재산 관리 및 각종 기념식 관련 기록물 - 약 30만 문서철
- ⑪ 각종 공무원관계 인사업무와 상벌관계 기록물 - 약 20만 문서철
- ⑫ 기타 - 약 22만 문서철

이상의 범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정러시아와 같은 전제정치 국가의 직접적인 통치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활동 관련 기록물과 유럽의 강국이었던 국제적 지위를 감안할 때 당연히 많은 수를 차지해야 할 외교관계 자료의 부재가 눈에 띈다. 짜리 전제정 관련 자료와 외교자료는 제정기부터 별도로 관리¹²⁾되어 오다가 1917년 혁명 이후 ‘르기아’의 전신이었던 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보존되어 왔다. 1950년대까지 생산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이들 기록은 1957년부터 61년 사이에 당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이유로 황가 및 궁정부, 그리고 경찰 자료들은 모스크바에 위치한 ‘소련 10월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 국립 중앙기록보존소’(현재는 러시아연방국립기록보존소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ГАРФ GARF)¹³⁾로, 그리고 외교 관계 기

12) 궁정부가 관리했던 황가 및 황제 개인 기록들은 황제의 여름별장이 위치했던 에카제리나 궁전에, 그리고 외교 기록은 외무부 산하 기록물보존소에 위치해 있었다.

13) ‘가르프’ 역시 ‘르기아’와 더불어 러시아 최대의 역사기록보존소로 꼽히고 있으나, 기록물이 포괄하는 역사적 시기와 양이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가르프’에는 180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생산된 기록물이 총 3045개의 기록물에 분류되어 있고 제정기보다는 소비에트 시대와 관련된 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양은 500만 문서철에 미치지 못한다. ‘가르프’에 대해서는 Архив России(1997), с. 137-139를 참조.

록물은 모스크바의 외무부 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실 기관들과 사회조직 및 기구들에 관한 기록물들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사회조직, 학문·예술·교육 관련 조직과 자선단체 관련 기록물로서 약 1만 6천 문서철이고, 둘째는 문서철의 수가 26만을 넘어서는 기업활동 관련 기록물들이다.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물들은 다음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① 정치·사회·종교 분야의 주요 활동가들에 관한 기록물 - 약 7만 여 문서철
- ② 러시아 주요 귀족가문 관련 기록물 - 약 2만여 문서철
- ③ 예술 및 학문 분야의 두드러진 활동가들에 관한 기록물 - 약 2만 여 문서철.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르기아’에는 한 시대의 최상부로부터 최하부까지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록물들이 보존되고 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역사기록물들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으며, 아울러 별도로 카탈로그 작업이 되어 있어 주제에 따른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2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카탈로그실은 연구자가 자신의 주제를 정한 후 ‘르기아’의 옛 역사기록물들과 직접 대면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¹⁴⁾.

카탈로그에 적용된 주제별 분류항목은 제정러시아 시기의 역사기록

14) 22개의 분류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건설에 관한 통계자료, 2) 제 민족과 민족문제, 3) 국가 권력과 관리, 신분제 관련 자료, 4) 경제 일반, 5) 공업, 6) 농업, 7) 재정 및 신용제도, 8) 교역, 9) 도로 및 통신수단, 10) 전신, 11) 노동문제, 12) 농업 및 농민 문제, 13) 노동자·농민·사회의 혁명적 운동, 14) 대외정책 및 국제관계, 15) 군사 및 전쟁 관계, 16) 학술, 17) 교육과 계몽 활동, 19) 보건, 20) 언론 및 문학, 20) 예술, 21) 종교와 교회, 22) 인명색인 등이다. 조호연(1997), 124에서 인용.

문서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실제 기록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자가 실제로 ‘르기아’를 찾아 카탈로그나 기타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 기록물에 접근하고자 할 때 그는 記錄庫(фонд : collection) - 文書函(опиць : inventory) - 文書綴(дело : file)로 내려가는 3단계 분류체계를 접하게 된다.¹⁵⁾ 이 ‘3단계’ 기록물 분류체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서 옛 러시아의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겨진다.

2) 제정러시아기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제정러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원로원과 중무원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르기아’는 위치 뿐 아니라 소장기록물의 분류와 조직 체계에서도 제정기에 발전되어 온 방식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 물론 제정 러시아 이전에도 기록물을 보존하고 분류하는 전통이 러시아에 남아 있었다. 고대 루시의 주요 기록물들은 대표적인 식자 계층인 교회

15) ‘폰드-오피시-젤로’에 대해 필자가 선택한 용어 기록고-문서함-문서철은 앞으로 깊은 논의와 합의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용어에 대해 셸렌버그의 책 *Modern Archive(SAA, 1965)*의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fond : 동출처기록군 - inventory : 주제사안군 - file : 기록단위’를 제시하고 있다(셸렌버그(2002), 186-187). 특히 ‘폰드’는 다른 곳에서 ‘집합적 기록군’이라고 해설적인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윌 책, 199). 러시아의 경우 위의 세 용어 이외에 규모가 큰 기록물군에 대해 ‘오피시’와 ‘젤로’ 사이에 ‘отделение’ 라는 또 하나의 구분단위를 추가해 기록물을 분류하기도 있는데 이는 영어로 division에 해당하므로 ‘부문’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역사기록물의 이용희망자는 이같은 과정을 따라 기록을 검색한 후 다시 문서철의 정확한 명칭을 찾아내는 한 과정을 더 거쳐야 비로소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주문서(требование)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실제 러시아의 기록보존소들에 들어가서 소장된 기록물들에 접근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은 조호연(1997), 126-127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사들과 기록행위를 주업으로 삼았던 궁정 서기들의 관리 영역에 남아 있었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은 법적, 행정적, 증거적 효용을 필요로 했던 지배계층, 특히 차르들의 문서고에 보존되었다. 이같은 실무적인 요구 때문에 보존되는 기록물은 자연스럽게 사안 중심의 분류 방식을 따랐으며, 결과적으로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의 대부분은 해당 사안의 최종 결과물인 조서나 판결문, 규정 등을 의미하는 ‘악티 акты’¹⁶⁾가 될 수밖에 없었다.

1800년대 초에 행정부서로 변화되는 뿌리까지(廳)들이 16-17세기 나타나 중앙행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들 각 청들은 자체적인 기록물보존고를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18세기까지도 교회 출신의 인사들이 관청에 보존되는 기록물들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속인의 경우 그 직급은 대단히 낮았으며, 주요 역할도 기록물의 분류와 보존이 아니라 문서의 필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존 기록물의 분류는 단순한 번호매김이나, 시기별 분류 및 문서가 발송된 행정 관청별 분류, 그리고 업무 담당자의 직책에 따른 분류 등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나마 기관들 상호간의 통일된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8세기초에 결정적인 변화가 표트르 1세에 의해 준비되었다. 그는 1720년에 발표된 일반규범 (Генеральный регламент)에서 기록보존소 업무를 담당할 기록물관리관(архивариус)이라는 직책을 도입하면서 체계적인 분류와 보존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1724년에는 러시아 최초의 역사기록보존소가 설립된 이래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옛 문서들-즉 비현용기록물-이 본격적으로 보존되기 시작했다

16) акты를 굳이 현대어로 번역하면 공용고문서(公用古文書) 쪽에 해당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일차적 의미가 ‘행위’나 ‘동작’을 뜻하는 러시아 명사 акт의 복수형태이다.

다¹⁷⁾. 표트르 1세의 조치는 18세기 초에 러시아 문서기록보관사에 나타난 결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러시아 최고의 역사기록관리학자의 하나로 평가되는 B.C. 일리자로프(Илизаров)의 견해에 따르면 18세기까지 러시아에서 ‘기록문서의 보관은 ... 통치수단의 하나에 불과’하였으나, 표트르 이후 통치관계 기록문서들의 보관업무는 정부가 ‘고수해 나가야 할 원칙을 잊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⁸⁾.

18세기 러시아 기록문서 분류체계의 기초를 놓는 일에는 Г. Ф. 밀러(Миллер, 1705-1783)와 Н.Н. 반티쉬-카멘스키(Бантыш-Каменский, 1737-1814) 양인의 공이 컸다. 밀러는 1766년부터 외무 콜레기아 산하 기록물보존고에서 일하기 시작해 1773년 소장이 되었다. 이미 1730년대부터 역사자료 수집가로 이름이 높았던 밀러는 고대 루시의 연대기들, 주요 가문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정리, 시베리아 탐험관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스텐카 라진과 푸가초프 반란 관련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에서 주요한 업적을 쌓은 공적으로 당대 학계의 평판이 높았으며, 자신이 모은 역사자료를 근거로 고대 루시 기원의 노르만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반티쉬-카멘스키는 밀러 보다 4년 먼저 외무 콜레기아 산하 기록물보존고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783년에 밀러를 이어 동 기록물보존고 소장이 되었다. 그의 주요 업적은 방대한 외교관계 기록물들의 정리에 있었지만 표트르 1세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남기는데 성공하였다.¹⁹⁾

이처럼 양인은 당대 러시아에서 가장 비중있는 기록물보존고의 책

17) Каменский А. Б.(1991), с. 23.

18) Илизаров Б. С.(1986), с. 47.

19) 반티쉬-카멘스키는 1788-89년 사이에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진 <Деяния Петра Великого>를 1차 출간하고, 다시 1790-97년간에 다수의 사료를 보충하여 모두 18권으로 이루어진 같은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임자로 활동하면서 기록의 형식논리적 원칙을 채용하여 분류체계의 기본을 삼았다. 기록물 자체의 형성사와 기록문서들의 구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항목과 부문에 따라 분류하는 그들의 방식은 주로 외교 업무 및 법안들이 대부분이었던 외무 콜레기아 산하 기록보존소 소장 자료와 원로원의 소장자료 (총 50만여 묶음의 서류들), 소수의 고대 러시아 문학자료들 및 몇몇 개인 관련 기록물들, 그리고 외형적으로 자료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분명했던 각종 계획도, 지도, 학술원과 예르미타쉬, 미술 아카데미, 모스크바 대학 등에 소장되었던 예술작품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앙부처들의 활동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밀러와 반티쉬-카멘스키에 의해 확립된 역사기록분류의 형식논리적 원칙은 곧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원칙에 따른 분류의 방식을 개별문서들에 적용할 경우 어떤 전쟁에서의 군사활동과 전과에 관한 기록문서와 동일 사건에 관련된 외교적 협상 관련 문서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양인의 활동은 사료의 수집과 이성적 비판을 기초로 한 출간에 관심이 고조되었던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계몽주의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이들이 정리하고 출간한 자료들이 역사가들로 하여금 각 분야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등 적지 않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초반까지의 전통적인 기록분류 방법과 완전히 결별하지는 못한 셈이었다.²⁰⁾

20) 18세기 후반에는 러시아 역사서술사에 주요한 인물로 거론되는 역사가들(트레차코프, 제스니츠키, 보그다노프, 노비코프 등)이 법제사, 교역사, 문화사, 도시사, 신화문제 등 다양한 개별주제들에 접근하고 있는데, 연구의 개별 주제들 자체가 정리된 사료가 없이는 연구가 진척되기 어려운 분야였고, 실제로 연구자들의 업적에서 기록보존소 활용빈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1820년대로 시기가 조금 내려오기는 하지만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 푸쉬킨 또한 외무 콜레기아 산하 기록보존소 자료를 기초로 ‘대위의 딸’을 비롯한 자신의 작품을 썼을 뿐 아니라, 역사 연구에 자신의 열정을 쏟았다. 플스토이의

1840년대 이래 러시아 역사계에 대학 출신 혹은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역사기록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П.М. 스트로예프(Строев), А.Х. 보스토코프(Востоков), Е.И. 안드레엠키(Андреевский), А.П. 보로노프(Воронов)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역사기록물의 새로운 분류법에 관한 타당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1860-80년대에 오면 그 논의들이 주제별 기록물 분류원칙을 주장하는 Н.В. 칼라쵸프(Калачев, 1819-1885)와 К.К. 즐로빈(Зловин) 일파에 대해 기록의 출처우선원칙을 강조하는 К.А. 오볼렌스키(Оболенский)와 Д.В. 폴레노프(Поленов) 일파의 주장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띠면서 논쟁의 주류를 이루며 상호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19세기 중반이래 러시아 기록물의 체계적 분류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던 인물들의 활동으로 러시아에서 기록관리학(архивоведение)이 확립되어 나갈 수 있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칼라쵸프(1819-1885)는 1877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고고학연구소(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의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기록관리학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었다.²¹⁾

1880년대에는 기존의 주요 분류원칙들이 갖는 약점을 지적하면서 ‘비분리의 원칙’을 주창한 이가 나타났다. 법률학자이자 대학교수였던 Д.Я. 사모크바소프(Самоквасов)는 자신의 대승인 칼라쵸프의 주장이든 그 반대파의 주장이든 간에 모두가 행정부서의 문서함(опись) 체제

대표적 소설인 ‘전쟁과 평화’ 역시 밀러와 반티쉬-카펜스키가 정리한 외교문서와 주요 가문의 역사자료들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

21) 소비에트 시대에 들어 동 기관은 러시아 학술원 산하의 고고학연구소 및 역사학연구소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러시아역사연구소의 건물이 바로 고고학연구소 자리였다. 한편 1907년에는 모스크바에도 ‘고고학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상트 페테르부르크와는 달리 교육부 산하의 사설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고, 이 학교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이후 소비에트 시대에 모스크바 기록보존소들의 주역이 되었다.

적 분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분류하되 동시에 합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비분리의 원칙, 다시 말해 ‘동종의 문서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²²⁾.

자신의 이러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는 문서합보다 상위의 개념인 기록고(фонд)라는 기록단위의 유용성을 주창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큰 집합체로서 기록고라는 단위를 분류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 그 속에 출처와 주제, 사건과 지역, 시기 등이 다른 자료들을 묶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시까지 분류의 최고단위였던 문서합을 위치시키고 이 분류 단위 내에서 출처별 분류 기준과 주제별 분류기준의 원칙들을 적용하며 기록물군을 세분화시킨다. 기록물군의 규모가 큰 경우라면 출처나 주제 뿐 아니라 특정 사건별, 혹은 시기별 분류까지 문서합의 단위로 설정될 수도 있다. 그 하부 분류 단위 역시 보다 구체적인 사건, 시기, 주제, 지역, 인물 등이 된다²³⁾. 이처럼 기록물의 생성시기와 장소에 비중을 두는 역사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은 하부 분류 단위의 무한정한 조합을 통해 큰 숫자 단위의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연계 속에 분류와 결합의 유기적 연관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모크바소프의 주요한 주장이자 공헌이라 할 수 있었다²⁴⁾.

사모크바소프가 제안한 기록물 분류체계는 당대의 주요 기록물 관련 학자들의 동감을 얻으며 공공기록물들의 정리에 적용되기 시작했

22) Самошенко В. Н.(1989), с. 78-79.

23) 기록물 분류체계에 대한 사모크바소프의 주장은 1902년에 모스크바에서 간행된 그의 대표적 저서 <러시아의 기록보존소업무 Архивное дело в России> 1-2권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있다.

24) 더 나아가 그는 개별 기록보존소들의 지역적 상호연결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영역에 위치한 기록보존소들의 자료는 그 지역에 남아 있도록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앙집중적인 기록관리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Самошенко В. Н.(1989), с. 79

고, 1905년 무렵에는 그의 주장을 기초로 한 전제 러시아 기록보존소 개혁의 구체적 계획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실행되도록 하는 일은 더 이상 제정러시아 정부의 소관이 아니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의 성공 이후 빠르게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 정권이 기록보존소 업무에 비상한 관심을 드러내어 ‘재조직과 중앙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3) 소비에트 시대의 기록 분류와 ‘크기아’의 기록물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한편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르 시대 러시아와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혁명 정부는 제정러시아의 유산들을 기초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가 몹시 불확실했던 1900년대에도 혁명운동가들에게 기록보존소의 필요성을 제안할만큼 기록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레닌²⁵⁾의 정권에서 기록관리의 부문 역시 기본적으로 제정러시아 말기의 논의들을 계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1918년에 볼셰비키 정권에 의해 발표된 “기록보존소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화에 관하여” 법령 이후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1923년에서 41년까지 발행된 중앙 잡지 《기록물보관 사업 Архивное дело》을 통해 이루어졌다²⁶⁾. 그 뒤를 이어 실제적인 분류연구 방법론을 주도했던 것은 1944년부터 계속 출간된 《모스크바 국립 역사-

25) 사회민주당 초기인 1904년에 제네바에는 레닌의 제안으로 볼셰비키 당 중앙위원회 부설의 기록보존소가 설립된 바 있었다. 조호연(1997), 118.

26) 이 잡지는 세계 제 2차대전으로 인해 간행이 중단되었다가 1956년부터 『기록관리학의 문제들(Вопросы архивоведения)』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고, 1966년부터는 『소비에트 기록보존소들(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로, 그리고 현재는 『조국 기록보존소들(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로 개칭되며 이어지고 있다.

기록관리대학 학술지 *Труды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ко-архивного института*»였는데, 이 잡지들을 이끌어간 주요 인물들이 모스크바와 옛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고고학연구소 출신자들이었던 것이다²⁷⁾.

소비에트 초기에 기록관리 업무를 주도했던 소련 중앙기록фон드관리부(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СССР)는 우선적인 분류의 원칙을 ‘문건의 내용이 아닌 형식을 따라 나눈다’는 것으로 정하고, 일차적으로 역사적 원칙을 기본으로 생성 시기와 장소에 비중을 두는 분류법으로 구분한 후, 마지막에 문건의 다양한 양상들 - 그림인가, 글씨인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었는가, 원본인가, 사본인가, 초안인가 혹은 확정·시행본인가 - 등을 분류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문서 형성의 역사를 우선으로 하고 문서의 양상을 마지막 단계로 정하여 문서 자체의 중요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²⁸⁾.

그 중간의 분류 원칙으로서 가능한 공산주의적 당파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권고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권고를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강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형식적인 분류의 기준에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입힌다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18년 10월 25일 법안은 역사적 원칙의 우선적인 시기구분의 단위로

27) 특히 학술지 4, 5, 8, 10, 11, 15, 16권이 유용하다. 그 이외에 주요 연구서들은 대부분이 역사 기록물에 대한 연구와 그와 관련한 기록관리 및 비평학이 전성을 이루었던 1950-60년대에 출간되었으며, 유용한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Петровская М.Ф., Состав ГАФ СССР и комплект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архивов документаль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М., 1959; Шобухов М.Н., Описание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архивах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М., 1956; Ковальчук Н.А., Тематические обзоры. М., 1960; Рудельсон К.И. Каталогизация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архивах СССР. М., 1958; Дербина В.Е., Крайская З.В., Фирсов И.Н.,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в архивном отде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и архиве действующего учреждения. М., 1959.

28) Долгих И.Ф., Рудельсон К.И.(1980), с. 8-9.

‘10월혁명’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기록물은 봉건-자본주의 시대의 ‘옛’ 기록과 10월혁명 이후의 ‘새’ 기록으로 나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개별 기록물들의 보관단위(즉 문서철(дело)-필자)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로 기록물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⁹⁾.

분류 체계의 확정에 있어 ‘르기아’와 관련하여 보다 의미있는 조치는 기록보존소의 계서적 체계를 놓은 1925년 2월 3일의 ‘러시아 공화국의 단일 국립 기록보존소 조직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연방적 의미를 갖는 기록물군과 지방적 의미를 갖는 기록물군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 보존소에 관한 내용들에 있었다. 규정은 연방적 의미를 갖는 기록물군을 중앙 기록보존소로, 지방, 혹은 지역적 의미를 갖는 기록물군을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공화국 기록보존소나 지역 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립 기록보존소의 체계적 구성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바로 이 규정에 의거하여 ‘르기아’의 전신이 되는 기록보존소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9년 1월 28일에 나온 보다 세부적인 ‘기록보존소 행정규정’을 보면, 혁명 이전기의 정부기구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모두 연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학문, 예술, 기술, 문화 등에 관한 개별 기록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되었다³⁰⁾. 기록물의 중요도 뿐 아니라 그 물리적 형식에 따른 보존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기록보존소의 구별도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문헌기록보존소와 사진 및 소리 기록보존소가 그 대표적인 구분이었다.

29) 1926년 5월 25일 중앙기록관리부 회람. Долгих И.Ф., Рудельсон К. И.(1980), с. 25에서 재인용.

30) 그와 함께 행정구역 단위로 기록물들이 보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연구자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중앙 및 지역 기록보존소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Долгих И.Ф., Рудельсон К. И.(1980), с. 27-30.

그렇다면 ‘크기아’에 소장되었던 기록물들은 그 기관이 확고한 자리를 잡은 소련 시절에 실제로 어떻게 분류되고 명명되었는가? 먼저 어떤 범위로 기록고의 단위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였다. 중앙기록관리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기록물보존고를 갖고 있던 조직이었다면 그 조직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 전체를 독자적인 기록고의 단위로 삼으라’고 지시하였다. 또 기록물의 분량을 고려하여 특정 조직이 2-3개의 기록고를 가질 수도 있도록 허용되었다³¹⁾. 단 이 경우에 1922년 3월 7일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비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했다. 즉 한 기관의 기록물은 하나의 기록고에 보관하되, 여러 기관이 함께 연관된 사안에 대한 기록물은 그것을 수령한 기관에 최종적으로 보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내용보다 기록물의 출처 원칙이 우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록고에 비해 문서함에 대한 규정은 조금 복잡하다. 이에 대해 중앙기록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다: 문서함은 우선 조직별로, 다음으로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분류하며, 다시 세부내용별 분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조직이라 함은 ‘출처’에 해당하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기록고를 구성하는 단위 다음으로 가장 큰 조직을 뜻했다. 예를 들어 내무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구의 경우에는 경찰국, 국내정치국 등의 ‘국’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연대기적인 순서는 1년에서 수십 년까지의 기간 단위일 수도 있었고, 혹은 (특별 및 대책위원회와 같은) 특정 조직의 가동기간에 한정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의 내용별 분류는 크게 세 기준, 즉 기록물의 내용이 정치적인 것인가, 법률적인 것인가, 혹은 행정적인 것인가에 따라 갈라졌다. 정치적 사건기록이나, 조사활동기록 등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31) Долгих И.Ф., Рудельсон К.И.(1980), с. 35.

분류되었고, 입법을 위한 활동과 관계된 조직이나 그 활동들은 법률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행정적인 의미를 갖는 기록문서함이란 얼마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의미가 관련업무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 행정 실무 영역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 산하의 국민교육국 기록고(733번)의 문서함 117번의 명칭은 ‘교육부 연례 보고서(1870-1916)’로 되어 있으나, 120-123번까지 4개의 문서함을 차지하는 ‘감사활동부문’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몇 개의 주들이 각 문서함별로 함께 묶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인 기록문서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가문 및 가족의 이름이 기록고의 기본 단위가 되며, 대개 하나의 문서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만일 한 가문에 관련된 기록고에 여러 유명인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대기 순에 따라 각 개인별 문서함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나의 문서함 안에는 적으면 몇 개에서 많게는 오천 개 이상의 문서철이 소속되어 있다. 연구자는 문서철의 이름을 보고서야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인 명칭부여의 과정에는 전문적인 역사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서철에 명칭이 붙게 되는 순서를 차례로 언급해보면, 기본적으로 주제→작성자→관계기관이나 개인→작성시점이 된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기록물의 내용적, 물리적 특징들을 나타내는 표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기록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초록인지 최종본인지, 필사본인지 타자 및 인쇄본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르기아’에 실제 소장된 문서철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기록고 No. 733에 관한 문서함의 명칭들을 찾아보면 No. 208 : “교육부 산하 교육 기관들의 사진 Фотографи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

о просвещения”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고, 기록고 № 817(카잔대성당 건설 위원회), 문서함 № 1의 목록을 찾아 내려가면, 문서철 № 451에 “카잔 교회 건설에 투입된 석공들에 관한 성명 일람표-1805년 (242 장) Именные ведомости о каменнотесах находившихся при построения Казанской церкви за 1805 г. (242 л.)”이라고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³²⁾. 이처럼 문서함에서 자료의 물리적 성격, 소관부서, 주제 등이 언급되기도 하며, 문서철에서는 더욱 세분되게 주제, 연대, 및 기록물의 분량 등이 밝혀져 있다.

개인기록 관련 기록고의 경우에도 원리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르기아’ 기록고 № 1574는 К.П. 포베도노스체프(Победоносцев)의 것인데, 단일 문서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문서철 № 9는 “사제 스테파노프가 포베도노스체프에게 올린 보고성 단신, 1880년 (6장) 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св. И. Стефанова К.П. Победоносцеву. 1880 г. (6 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기록물의 주제, 작성자, 관계인, 작성시점, 분량 등의 순서로 기술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록물의 분류 체계는 오늘날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콘들을 여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적으로 기록고-문서함-문서철을 거쳐 최종적인 개별 기록물까지 접근할 수 있는 4단계의 계통이 되며, 다시 문서함과 문서철은 시간, 주제 및 문제, 소관부서, 기록물의 형식, 작성자 등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32) 문서철의 제목과 문서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로 든 ‘카잔교회 교회 건설에 투입된 석공들에 관한 성명 일람표’를 실제로 열람해 보면 그 기록물이 개인들에게 노임을 지불하기 위해 작성된 목록들의 집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록물의 내용적 가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어떤 연구자에게는 일군 중 특정인의 행적을 찾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반면 다른 연구자에게는 노임의 액수가 중요하다. - 형식에 따라 명칭을 붙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러시아 역사기록보존소와 역사학

‘르기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러시아 역사기록물의 분류체계의 발전 과정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추적해보고, 또한 소비에트에 의해 결정된 새로운 원칙이 구체적인 역사기록물에 어떻게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정러시아 말기에 기록물 분류체계의 러시아적 원형이 거의 형성되었지만 소비에트시기에 와서야 그것이 확정되어 구체적 모습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왜 소비에트 정권은 제정 말에 정돈된 기록물 분류방식의 근간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였는가? 제정러시아-소비에트 정권으로의 전환기에 확립된 기록물 분류의 원칙은 ‘르기아’를 비롯한 러시아 역사기록보존소에 어떠한 특성을 부여하였으며 그 특성은 역사학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하겠으나, 필자의 개인적 경험들과 몇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근거로 하는 얼마간의 주관적인 견해가 허용된다면 러시아 혁명이라는 대사건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러시아 역사기록보존소의 두드러진 특징들은 1917년 혁명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었다. 차르 러시아와의 근본적인 단절을 선언한 소비에트 체제의 성립을 계기로 러시아는 프랑스와 같은 두터운 전통의 무계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간 자유롭게 자신의 역사물을 재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이때 새로운 정권 앞에는 전제정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인민을 억압한 짜리정의 본성’을 폭로하는 주요한 근거로 이용할 필요의 다른 한편으로 같은 기록물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러시아 인민의 역사적, 문화적 창조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제정러시아 관료제 하에서라면 그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폐기될 수밖에 없었을 다량의 현용기록과 준현용기록들이 언급한 두 가지 요구라는 관점에서 재평가되고 결과적으로 그 상당수가 고스란히 보관되었다. 중앙의 주요 기록보존소들이 엄청난 기록물들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정러시아 말기라는 특정 시대와 관련된 과도히 많은 역사기록물은 기록의 중복과 그로 인한 비용의 발생 및 기록물 이용의 어려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역사기록의 증거적 권위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세밀한 역사적 논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료는 자료의 부재에 허덕이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복한 엄살’일 것이다. 사안에 따라 굴곡이 없지 않으나 한 법안의 발의부터 초안의 작성과 수정 및 최종 결정까지를 그 과정 뿐 아니라 작업에 참여한 인물들과 그들의 성격의 일부까지도 짐작하게 하며 치밀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기록물 철을 러시아 역사기록보존소만큼 자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라 믿어진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개별 문서의 변호조차 기입되지 않은 문서철 - 문서철화 된 이후 연구자의 손을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기록 - 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보존된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역사기록보존소들은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밝혀줄 연구자들을 필요로 하였고,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접해 왔다. 역사가는 아키비스트에게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역사기록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아키비스트 역시 기록의 분류와 기술을 위해 역사가에게 문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즉 일찍부터 연구자에 대한 기록물 접근이 용이

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보존 자료의 방대함이 학풍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르기아’에서 제정러시아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신이 전문 연구자라 할지라도 애당초 연구 영역을 넓게 잡기가 불가능하며, 좁고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존된 기록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역사연구자는 곧 제기될 반박에 직면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페테르부르크가 일찍부터 보다 실증적이고 신중한 역사연구의 전통을 갖게 된 이유에 ‘르기아’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동시에 한 연구자가 방대한 기록 모두를 다 섭렵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협동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협력적인 토론과 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련 역사학계를 살펴볼 때, 한때 역사기록보존소는 민감한 정치적 변동의 희생양이 될 위협에 처한 다수 역사가들의 훌륭한 피난처 역할도 담당했다. 스탈린에서 후르시쵸프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기가 러시아 역사학계에 있어서 고문서 발굴과 해독의 전성기였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새러시아의 출발 이후 러시아 기록관리학계에서 거론된 주요한 논의들에서 정보디지털화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풍성한 기록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지속적인 공개는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자료의 이용과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과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다수의 연구자들이 고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문제를 러시아의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하는 지표로 이해한 다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현재로서는 얼마간의 실망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기록물관리학계의 주요한 논의들은 정보디지털

화의 기술적인 면을 다루고 있거나, 외국에서의 시도를 소개하는 차원, 혹은 러시아에도 유사한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역설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였다. 아직 이들의 관심은 기록보존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기대할 수 있는 ‘기록사료들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정보의 확대’보다는 ‘기록보존소 자료들의 손상없는 수리와 복제’, ‘기술적으로 손쉬운 보존’이라는 측면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실정이다³³⁾.

러시아의 기록보존소가 사회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성 개발의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직 체계의 정비와 개방,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에 적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가 요구된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 현재의 러시아 기록보존소와 그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러시아 사회의 가속화되는 자본주의적 경향이 공공기구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국가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련시절과 같은 관의 전적인 후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러시아의 아키비스트들이 제정러시아-소비에트 정권 교체기의 적지 않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들의 발전된 기록관리체계를 정착시켰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화의 거

33) Банасюкевич В.Д., Грум-Гржимайло Ю.В., Чернин Э.А., На пути к созданию автомата тиз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1999, № 2, с.27-31; Тихонов В.И., Юшин И.Ф., Современные концепции электронных архивов //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1999, № 1, с.18-27; Михайлов О.А., Электронные документы в архивах : проблемы приема, обеспечения сохранност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 1998 등을 보라.

센 요구와 기술혁명의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발전적인 모델을 이른 시일 안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사이트>

http://www.iisg.nl/~abb/abb_b3.html
<http://www.opeweb.ru/rusarch>
<http://www.rusarchives.ru/lows/zakon.shtml/>
<http://www.rusarchives.ru/federal/rgia/>
<http://www.temple.nio.ru/archives.html>

<문헌자료>

- 방일권(2002),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상과 기록문헌보관소 자료조사 : PGIA와 TsGAKFFD SPb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 16집.
- 버크 P.(1994), 박차섭 역, 『역사학과 사회이론』, 까치.
- 셀렌버그 T.R.(2002), 이원영 역, 『현대기록학개론』, 진리탐구.
- 조호연(1996), 「전환기의 러시아 기록보존소」, 『기록보존』, 제 9호.
- 조호연(1997), 「러시아의 기록보존업무」, 『역사비평』, 1997, 봄호(36).
- 최정태·윤송원(2001),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권 1호.
- 페로 M.(1999), 주경철 역, 『역사와 영화』, 까치.
- Archives in Russia.(1993) : A Brief Directory : Part I, Moscow and St. Petersburg, Moscow-Washington DC : IREX.
- Belov G.A.(1964), "The Organization of the Archive System in the USSR", *American Archives*. 1964. No. 7 (Oct).
- Grimsted P.K(1982),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es*. 1982. Vol. 45. No 4 (Fall).

- Grimsted P.K.(1993), "Russian Archives in Transition : Caught Between Political Cross-Fire and Economic Crisis," *American Archivist*, Vol. 56 (Fall).
- Karasik T.(1993), *The Post-Soviet Archives : Organization, Access and Declassification*. Santa-Monica : Rand.
- Russian State Historic Archives, *St. Petersburg : Annotated Register*. St. Petersburg, Russian-Baltic Information Center-Blitz, 1994.
- Архивы России(1997),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М.,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 Боброва Е.В., Залаев Г.З.(2000), Архивы и Интернет // Отечественный архивы, 2000, No. 2.
- Вишневский В.Е.(1996),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фирмы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1907-1916, М.
- Долгих И.Ф., Рудельсон К.И.(1980),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М.
- Илизаров Б. С.(1986), Архивный документ в свете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социальной памяти //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 1985 г., М.
- Каменский А. Б.(1991), Архивное дело в России XVIII века :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спект, М.
- Магидов В.М.,(1993), Кинофотофоноархивы :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ографии, архивоведения и историковедения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на соис. учен. степ. д.и.н.), Рос. гос.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 М.
- Мякушев С.Д.(2001), 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маленьких людей" : со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и архивы //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2001, No. 2.
-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 Путеводитель, СПб., 2000.
- Самоквасов Д. Я.(1902), Архивное дело в России, кн. 1-2, М.
- Самощенко В. Н.(1989), Истор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М.
- Шепелев Л.Е.(1966), Работа исследователя с архив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М., Л.

Abstract

Historical Development of Russian Principle on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Archives : In Case of Russian State Historical Archive(RGIA)

Bang, Il-Kwon

Russian State Historical Archive (Rossiiskii gosudarstvennyi istoricheskii arkhiv - RGIA) received its present name in June 1992, and before 1961 was known as TsGIA. RGIA holds the major records of high-level and central state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agencies of tsarist Russia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1910s (except the records of the Army, Nav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as fonds of social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of prerevolutionary Russia.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assist understanding russian principle on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archives with its historical development focusing on one of the biggest historical archive in Russia. The primary set of historical records in RGIA remain arranged in 3-steps classification system : fond (collection) -- opis' (inventory) -- delo (file). In this general survey of RGIA author offer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 of archives and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its huge amounts of primary sources in connection with influence upon historical studies.

Despite the general economic crisis Russian archives are struggling to keep their doors open for public research and are exerting their energies in present electronic information to scholars and other researchers from throughout the world. The result, however, is not rewarded enough, considering the effort involved.

